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170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재활용품 수집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안전용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,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필요한 운반 장비 추가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하는 안전용품 종류의 구체화(안 제7조제1항)
- 나. 재활용품 수집·운반을 위한 각종 운반 장비 지원 추가(안 제7조제1항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2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3) 부구청장 지시사항 시달[제89호 46번] (기획예산과-7100(' 20.06.17.)
- 4) 「부구청장 지시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(청소행정과-17388(' 20.06.23.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10. 8 ~ 10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5)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수정 의결(2020.11.03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인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보호와 수집·운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야광조끼,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
2. 방서(防暑)·방한 의류 및 신발
3. 손수레 등 재활용품 수집·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<u>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,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<u>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인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보호와 수집·운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야광조끼,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</u> 2. <u>방서(防暑)·방한 의류 및 신발</u> 3. <u>손수레 등 재활용품 수집·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</u> 4. <u>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7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인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 보호와 수집·운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억 미만임.
- 2021년 재활용품 수집인 수집운반 장비 추가지원 예산 45,000,000원

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홍경자 (☎ 3153-9213)